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7,886,303	16,436,589
일반회계	467,313,757	14,019,413
특별회계	80,572,546	2,417,176
공기업특별회계	41,174,880	1,235,246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41,174,880	1,235,246
기타특별회계	39,397,666	1,181,930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21,341,604	640,24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4,786,239	443,587
농공지구조성사업	1,364,485	40,935
의료급여기금운영	1,466,497	43,995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438,841	13,16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500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3,109,67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43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